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257 호 2020. 10. 8.(목)

훈 령

-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72호[울산광역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스포츠 인권보호 규정]..... 1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175호[하천 점용 허가 고시]..... 9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177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10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180호[하천 점용 협의 고시]..... 11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1076호[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2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1119호[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2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1122호[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0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1130호[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36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1134호[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44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1135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0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1138호[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6

안 내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알림마당 → 북구공보
-----	---

회								
람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스포츠 인권보호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20년 10월 8일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72호

울산광역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스포츠 인권보호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의 스포츠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체육인”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지도자를 말한다.
3. “인권보장 정책”이란 체육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정책 등 인권침해(성희롱, 성폭행, 직장 내 갑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예방과 구제 등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을 말한다.

4. “인권보호관”이란 직장운동경기부 담당부서장 및 담당자를 말하며, 필요한 경우 스포츠 인권보호의 효율성을 위해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되는 직원을 말한다.
5. “인권감수성”이란 사회에서의 불합리한 관행, 제도 등을 인권 문제의 차원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6.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7.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언동으로 상대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구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 및 지도자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에 대한 적극적인 인권보장 정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가 있으며, 사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은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인권보장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관계부서와 협력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5년마다 스포츠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인권침해 신고·상담 등) ① 구청장은 체육인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조직과 인권침해 상담창구(이하 “상담창구”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인권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인권보호관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인권보호관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 실시 또는 감사부서에 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 직원 중 2명 이상을 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권보호관은 남성과 여성 직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상담
2.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접수·조사
3. 인권침해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 에 관한 사항
4. 인권침해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업무

⑤ 인권침해 예방 담당부서장(이하 “담당부서장” 이라 한다)은 상담창구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인권침해 사건 접수 및 처리대장, 스포츠 인권보호를 위한 사건 처리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으며, 신고 및 상담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조사 및 징계 등) ① 인권침해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상담창구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인권침해 사건 접수신청서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인권보호관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요청한 사안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조사 신청자가 신청을 취소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담당부서장은 조사 과정에서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 담당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⑥ 담당부서장은 조사 진행상황을 인권침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온라인, 유선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별도 감사가 필요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 규정을 준용하여 행위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징계, 인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징계기준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 제53조 및 제54조를 따른다.

제7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구청장은 인권침해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 등을 분리하고, 신변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권침해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대상자에게 상담, 조사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피해자에 대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인권보호관 및 관계 전문가 등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인권보호관은 인권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 후 즉시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사이버 고충상담 창구) 구청장은 인권침해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 고충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인권교육 등 실시) ① 구청장은 소속 체육인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 감수성 정립을 위한 인권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신규 입단 체육인에 대하여 신규 임용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대한 체육회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의 스포츠 인권보호를 위해 제도적 기준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 스포츠 인권보호 규정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제1조 ~ 제3조)
- 스포츠 인권보호를 위한 책무 규정(제4조)
- 인권침해 신고·상담 등(제5조)
- 조사 및 징계 등(제6조)
- 인권교육 등 실시(제10조)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0 - 175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8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하천의 명칭

동 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에스케이텔레콤(주) 동부 Infra 본부장

나.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258

3. 점용 목적 및 개요

공작물의 설치(통신주)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천곡동 1032-9번지

나. 면적 : 영구 1m²

5. 점용 허가의 유효기간

영구 : 2020. 9. 28. ~ 2024. 12. 31.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0 - 177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8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당수골길 27	호계동 501	2020. 10. 8.	건축물 멸실
화암길 35-7	산하동 13-2	2020. 10. 8.	건축물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10. 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0 - 180호

하천 점용 협의 고시

「하천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천 점용협의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8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하천의 명칭

동 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나. 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연암동)

3. 점용 목적 및 개요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유채단지 및 임시주차장 조성)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천곡동 1020-20번지 외 2필지

나. 면적 : 일시 63,698㎡

5. 점용 협의 유효기간

영구 : 2020. 10. 7. ~ 2021. 4. 30.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0-1076호

울산광역시 복구 청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제정이유

「청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2020. 8. 5.)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 청년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을 위해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협의체 구성·운영, 청년센터 및 청년시설 설치 등을 명시한 자치법규가 필요하므로 「울산광역시 복구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제4조)
- 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기초조사 등(안 제5조, 제6조)
- 라. 청년정책위원회(안 제7조부터 제11조)
- 마. 청년정책협의체(안 제12조)

- 바. 청년센터 및 청년시설 설치·운영(안 제13조, 제14조)
- 사.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등(안 제15조부터 제20조)
- 아.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안 제21조)
- 자. 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안 제22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고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사항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기획예산담당관 (우)44248
- 전화번호 : 052-241-7154
- 팩스번호 : 052-241-7109
- E-mail : ssunmi0825@korea.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https://www.bukgu.ulsan.kr>)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개인정보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제정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0년 10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청년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복구에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의 범위는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능력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능력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정책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울산광역시 복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창업지원

라. 청년의 생활안정

마. 청년 문화·예술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 기초조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청년정책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관련 사업의 수행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 관련 업무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며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
3. 청년정책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 기관의 장
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청년정책협의체) ① 구청장은 청년의 구정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제안하고 청년정책의 추진에 참여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청년센터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
3. 청년의 취업·진로·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4.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6.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청년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4항의 따라 청년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청년시설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과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년시설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거주 지원시설 : 주거독립이 필요한 청년에게 거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청년창업 지원시설 : 청년에게 창업 및 새로운 직업·직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3. 청년고용 지원시설 : 청년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취업 알선 등 고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4. 그 밖에 청년활동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 ③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청년의 참여확대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청년의 능력개발 등) ① 구청장은 취업 애로 및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능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전문적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일자리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과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의 생활안정) ①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과 상담을 통하여 청년이 합리적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청년 문화·예술의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문화적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 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의 권리 보호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22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청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2. 청년 자립 역량 강화
3. 축제 등 문화 행사 및 청년거리 조성
4. 청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5. 청년 관련 연구·조사 활동
6. 협의체 활동 지원 사업
7. 청년의 권리 보호와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0-1119호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제정이유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이고 원활한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 지원·조정하는 기구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안 제3조)
- 나. 지원단의 구성, 단장 임무 및 실무팀의 편성(안 제4조 ~ 제6조)
- 다. 지원단의 설치(안 제7조)
- 라.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안 제8조)
- 마.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안 제9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1

4. 근거법규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
- 나.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복지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기재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 : 붙임 2

- 1) 입고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나. 의견 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1010(연암동, 북구청), 4층 복지지원과
- 2) 전화번호 : 052-241-7634
- 3) 팩스번호 : 052-241-7609
- 4) 전자우편(E-mail) : irg2tmdi@korea.kr

다. 이 조례의 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s://www.bukgu.ulsan.kr/>)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1]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 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복구 자원봉사 업무 소관 부서장과 「울산광역시 복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복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울산광역시 복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 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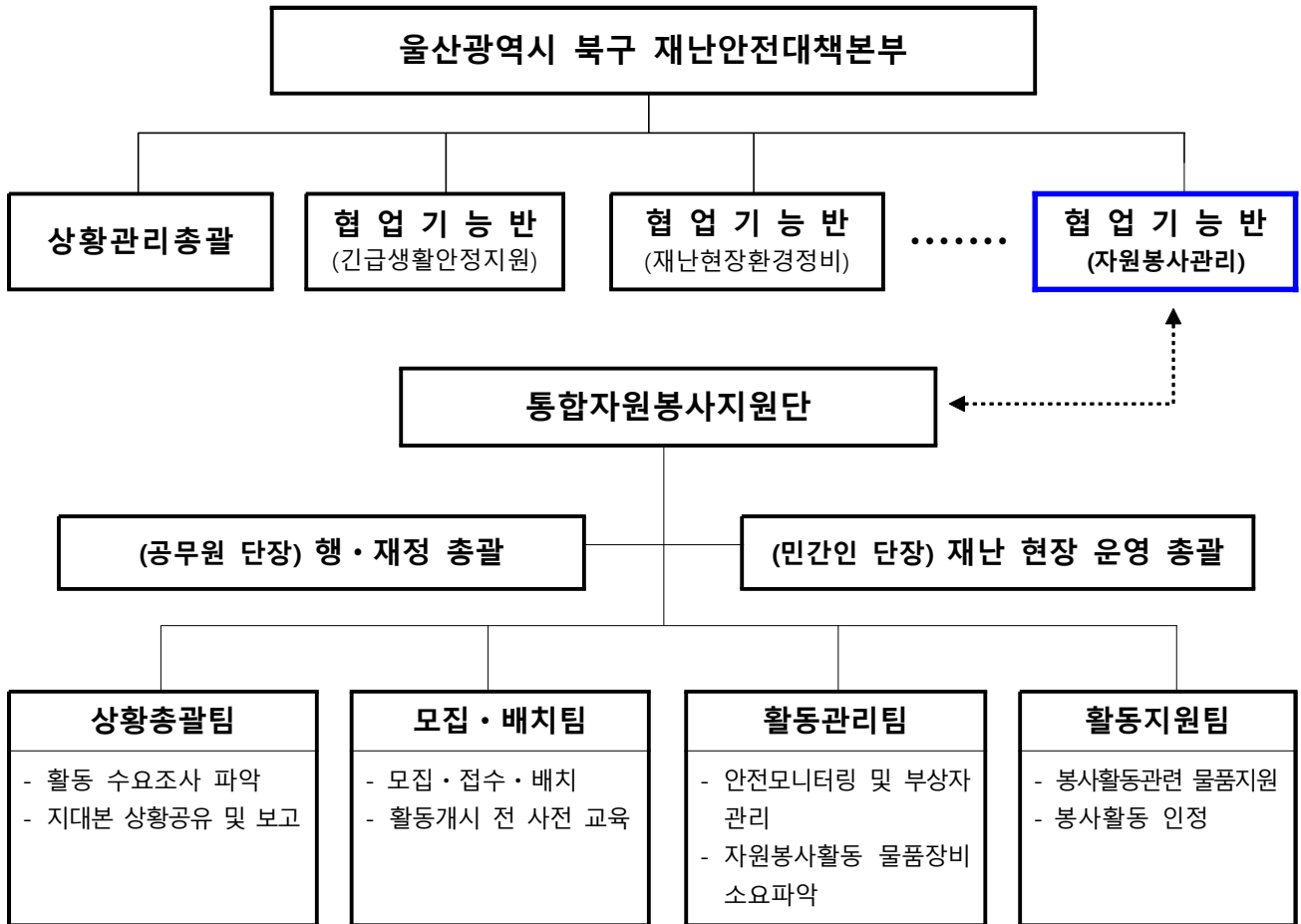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편제
(제6조제2항 관련)



[별표 2]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실무팀 구성
(제6조제2항 관련)

구 분		직 위	담 당 사 무
통합 자원 봉사 지원 단장	공무원	자원봉사업무 소관 부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관련 행·재정 지원 사항 총괄 ○ 자원봉사활동 상황 관리 및 필요 사항 발굴·지원
	민간인	자원봉사센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관련 현장 총괄
실 무 팀	상황 총괄팀	자원봉사업무 소관 부서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 필요사항 발굴 ○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공유 및 보고 등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행·재정 지원 및 홍보 총괄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활동 분야, 인원 등 수요 조사
	모집· 배치팀	자원봉사센터 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관련 사항 총괄
		자원봉사센터 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관련 사항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교육, 안내·모집 및 일별·분야별 배치 등
	활동 관리팀	자원봉사센터 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 사항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모니터링(위험요소 관찰), 의료기관과 연계 ○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장비 소요 파악 ○ 자원봉사활동 평가(모니터링, 활동 기록 등)
	활동 지원팀	자원봉사업무 소관 부서 주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지원 ○ 자원봉사자 급·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 봉사활동인정(시간 인정,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
		자원봉사센터 직원	

※ 비 고

-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 사무를 정한다.
- 재난 규모에 따라 기능 통합 등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붙임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개인정보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0년 10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0 -1122호

울산광역시 복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와 관련하여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 도래(2020. 12. 31.)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지역의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5조)
 - 2020년 12월 31일까지 ⇒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 연장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사회복지과 (우)44248
- 전화번호 : 052-241-7621
- 팩스번호 : 052-241-7669
- E-mail : cjhsin1@korea.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https://www.bukgu.ulsan.kr>)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붙임
1.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4. 의견서 1부. 끝.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0년 12월 31일</u> 까지로 한다.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 <u>2025년 12월 31일</u> -----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88호, 2020. 6. 9, 일부개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부칙 <제17388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은 관련 조례 개정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재정안정화 계정" 및 "통합 계정"으로 본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0-1130호

울산광역시 복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제정이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나. 업무와 기능(안 제4조)
- 다.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이용대상 및 이용의 제한(안 제11조, 제13조)
- 마. 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안 제12조, 별표)

3. 근거법령

- 가.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
- 나.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04조, 제136조, 제139조, 제144조
-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4. 제정조례안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보건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8, 북구보건소

- 전화번호: 052-241-8244, 팩스번호: 052-241-8245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붙임]**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라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인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으로서 울산광역시 북구가 설치한 산후조리원을 말한다.

제3조(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이하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매곡5로 60(호계동)에 둔다.

제4조(업무와 기능) 공공산후조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1. 분만 직후의 산모나 신생아에게 급식·요양과 편의 제공
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3. 산모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
4. 건물 및 부속 시설의 유지관리
5.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소재 시설관리공단
4. 그 밖에 구청장이 운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시설 보호와 적절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의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원장 및 직원) ① 공공산후조리원은 원장과 해당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일반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원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명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③ 원장과 일반직원에 대한 자격기준 및 소관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수탁자의 선정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선정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공공기관 위탁인 경우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 의거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모성·영유아 등 구민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이용료 등 운용자산을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 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울산광역시 북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과의 협약사항을 준수하고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그 복구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을 변경하거나 추가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운영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이용대상)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대상은 이용을 신청하는 날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으나,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등) 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에게는 이용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6. 「의료급여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제4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산모
 9.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10. 그 밖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산모
-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비율 및 방법과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만,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산모 및 신생아
3.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제12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기준 이용료		
	1주(6박7일)	2주(13박14일)	3주(20박21일)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945,000	1,890,000	2,835,000
타 지역 주민	1,039,500	2,079,000	3,118,500

※ 비고

1.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산모 1명 또는 산모 1명과 신생아 1명을 기준으로 하며, 다태아 등의 출산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기준보다 늘어나는 신생아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한다.
2. 울산광역시 북구 외 타 지역 주민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기준이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한다.
3.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한다.(단, 국적 미취득 다문화가정의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증으로 거주여부를 확인한다.)
4. 위 이용료 외 산후조리에 필요한 소모용품 및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재료비·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의 건 제 출 서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등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0 - 1134호

「울산광역시 복구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제정이유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각종 점검 대상 중 위임사항 규정(안 제3조 ~ 제6조)

나. 건축물 해체공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다.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라.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건축주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건축주택과

- 전화번호 : 052)241-8026 팩스번호 : 052)241-8019

5.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4.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5.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6.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청장이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복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견본주택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제8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지분 및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2.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의 건 제 출 서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등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0-1135호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반영하여 상위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조항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보조금 신청 제한·감액 규정 삭제(안 제21조제4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참조: 기획예산 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고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사항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기획예산담당관 (우)44248
- 전화번호 : 052-241-7113
- 팩스번호 : 052-241-7109

5.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1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p> <p>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u>④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지방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u></p>	<p>제21조(실적보고) ① ~ ③ 현행유지</p> <p><삭제></p>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⑦항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의 건 제 출 서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명 <small>(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small>	전화번호	
	주 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등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0-1138호

울산광역시 복구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포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 포상의 종류에 “모범공무원 포상”, “공로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성실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 현재 시행되지 않는 “민주구민질서상”관련 조항 삭제 및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 발급” 규정을 명문화하는 등 포상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

2. 주요내용

가. 포상대상자 개정(안 제2조)

[현행] 공무원·구민(외국인 포함) 및 단체

[개정] 구민(외국인 포함)·기관·단체 및 울산광역시 복구 소속 직원

나. 포상의 종류 개정(안 제4조)

[현행] 표창장·감사장·상장 및 민주구민질서상

[개정] 표창장 및 표창패, 감사장 및 감사패, 상장 및 상패, 모범공무원 포상, 공로패

다. 퇴직직원 공로패 수여 근거 신설(안 제8조)

라. 공적사실의 현지 확인 및 포상 결격사유 검토사항 신설(안 제10조)

마. 공적심의 신설(안 제11조)

바. 포상의 대리수령 근거 신설(안 제14조)

사. 포상의 취소 관련 내용 신설(안 제16조)

아. 포상사실 확인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17조)

자. 기타 용어 및 표현 등 정비

차. 별지 서식 정비, 공로패 및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 별지 서식 신설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공무원법」 제79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0. 28(수)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 출 처 : 우)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울산광역시 북구 총무과 전화 : 052)241-7213, 팩스 : 052)241-7209】

5.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붙임 1. 의견서 제출 서식 1부.

2.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붙임1 **의견서**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울산광역시 복구 포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붙임2 울산광역시 복구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포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포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복구에서 수여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및 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구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관·단체 및 울산광역시 복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직원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구 이외의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② 구에서 수여하는 포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여한다. 다만, 동장도 필요시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모범공무원 포상, 공로패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미풍양속 순화 및 구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
2. 구 소속 직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한 사람
3. 구정 주요시책 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구 소속 기관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구정 수행에 적극 협조한 개인 및 기관·단체
2. 대외적으로 구의 명예를 높인 개인 및 기관·단체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개인 및 기관·단체
2. 학술, 예술, 체육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및 기관·단체
3. 교육훈련 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개인 및 기관·단체

제8조(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구 소속 직원
2. 구정에 적극 협조한 구 관련 기관·단체에 재직하고 퇴직하는 임직원 등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따르며, 그 방법은 포상수여 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포상을 수여할 때에는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및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대상자의 추천) ① 포상(상장은 제외한다)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구의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사업소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포상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이 직접 추천하는 경우에는 20명 이상의 연서로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포상 추천권자는 공적사실의 현지 확인 및 포상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적심의) ① 포상은 울산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포상에 대하여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포상대상자의 결정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수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포상 운영기준 및 분야 등을 규정한 포상 업무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3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의 대리수령)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받을 수 있다.

제15조(포상대장)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의 취소) ① 포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 3.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포상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 등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표	창	장(패)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표 창 문)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 ○	인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감	사	장(패)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감 사 문)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 ○	인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상		장(패)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상 장 문)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 ○		인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공	로	패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공 로 문)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 ○		인

[별지 제5호서식]

(앞면)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 자)	
(2) 생년월일		(3) 군 번 (군인의 경우)	
(4) 성 별		(5) 국 적 (외국인의 경우)	
(6) 주 소			
(7) 직 업		(8) 소 속	
(9) 직 급		(10) 직 위	
(11) 근무기간		(12) 공적분야	
(13) 공적요지(50자 내외)			
(14) 추천훈격		(15) 추천순위	
조 사 자			
(16) 소 속		(17) 직 위	
(18) 직 급		(19) 성 명	(인)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뒷면)

주 요 학 력 및 경 력			
(20) 년 월 일	(21) 이 력	(22) 년 월 일	(23)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4) 년 월 일	(25) 내 용	(26) 년 월 일	(27) 내 용
(28) 공 적 사 항			

→ 공적조서(을)지 작성 ()매

공 적 조 서(을)

(28) 공 적 사 항

[별지 제6호서식]

포 상 대 장

포상 번호	포 상 연월일	포상 종류	포상 기관	소속 또는 주 소	직위 또는 직 급	성명	생년월일	포상하게 된 공적 개요	부상	주관부서

※ 포상대장은 포상종류별 [표창장(모범공무원포상 포함), 상장, 감사장(공로패포함)] 로 구분 기재하며, 포상호수는 매년 1월 1일에 새 번호로 시작한다.

[별지 제7호서식]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

포상 번호	포 상 연월일	포상 종류	포상 기관	소속 또는 주소	직위 또는 직급	성 명	생년월일
포상하게 된 공적개요							

상기와 같이 포상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직인

붙임3 관계법령**[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